

#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이동현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691
--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 : 2019년 5월 24일

발 의 자 : 이동현 의원 (1명)

찬 성 자 : 권수정, 김제리, 김화숙,  
박기재, 오현정, 이성배,  
임만균, 임종국, 장상기,  
전병주, 한기영 의원 (11명)

## 1. 제안이유

- 교통약자인 장애인, 고령자, 임산부,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, 어린이 등의 대중교통 이용시 사건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.
- 현재 교통약자법에 따라 아동 및 청소년도 이용 가능한 수직손잡이가 설치·운영되고 있으나,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여전히 설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교통수단이 남아 있는 것으로 조사됨.
- 교통약자의 사건사고 경감을 위한 안내방송, 스티커 부착, 이동편의 시설 설치 지원 등을 통한 대중교통 이용시 사건사고를 줄이고자 함.

## 2. 주요골자

- 교통약자를 위한 안내 방송
  - 교통사업자는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이용안전을 위해 자리에 앉거나 손잡이를 잡도록 하는 등의 안내방송을 하여야 한다.(제 18조 2항)
  
- 교통약자를 위한 안내문 및 스티커 부착
  - 교통사업자는 교통약자의 이용안전을 위한 안내방송과 스티커 부착 등을 할 수 있다. (제18조 3항)
  
- 이동편의시설 설치 지원
  - 시장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이동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(제25조 2항)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규 : 「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」
- 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대상사유서 참조
- 다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

##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교통사업자는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이용안전을 위하여 자리에 앉거나 손잡이를 잡도록 하는 등의 안내방송을 하여야 한다.

③ 교통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내방송과 관련된 안내문, 스티커 등을 제작하여 차량 내부에 부착할 수 있다.

제2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시장은 교통사업자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법 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을 초과하여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     행	개    정    안
<p>제18조(교통약자를 위한 안내방송) (생략)</p> <p><u>&lt;신설&gt;</u></p>    <p><u>&lt;신설&gt;</u></p>	<p>제18조(교통약자를 위한 안내방송) ①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</p> <p><u>② 교통사업자는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이용안전을 위하여 자리에 앉거나 손잡이를 잡도록 하는 등의 안내방송을 하여야 한다.</u></p> <p><u>③ 교통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내방송과 관련된 안내문, 스티커 등을 제작하여 차량 내부에 부착할 수 있다.</u></p>
<p>제25조(이동편의시설 설치 지원) (생략)</p> <p><u>&lt;신설&gt;</u></p>	<p>제25조(이동편의시설 설치 지원) ①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</p> <p><u>② 시장은 교통사업자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법 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을 초과하여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</u></p>

#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### 1. 비용발생 요인

-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18조제2항(안내방송), 제3항(안내문, 스티커부착) 제25조제2항(설치기준 개수 초과시 이동편의시설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)을 신설함에 따라 비용 발생

#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

### 3. 미첨부 사유

가.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(제3조제1항제2호)

- (미첨부 사유와 관련한 추가내용이 있을 시 서술)

#### 나. 추계결과

- 조례안 제18조 제2항, 제3항, 제25조제2항에 따라 비용이 발생하나 교통사업자가 추가설치를 원하는 이동편의시설의 종류나 수요량을 파악하기 곤란하여 비용의 기술적 추계 어려움

※ 참고 「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」

제10조제1항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이동편의시설의 종류는 대상시설의 규모와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

**[별표2]**

대상시설별 이동편의시설의 종류(제12조 관련)

1. 교통수단

이동편의시설 대상시설		안내시설			내부시설				그 밖의 시설		
		안내방송	문자안내판	목적지 표시	휠체어 승강설비	휠체어 보관함	교통약자용 좌석	장애인 전용 화장실	수직 손잡이	장애인 접근가능 표시	출입구 통로
버스	시내버스 (저상형)	○	○	○	○		○		○	○	
	시내버스 (일반형)	○	○	○	○		○		○	○	
	시내버스 (좌석형)	○	○	○	○		○			○	
	농어촌 버스	○	○	○	○		○		○	○	
	시외버스	○	○	○	○		○			○	
철도차량		○	○	○	○	○	○	○		○	○
도시철도차량		○	○	○			○		○	○	○
항공기		○	○	○		○	○	○		○	○
선박		○	○	○	○	○	○	○		○	○
광역전철		○	○	○			○		○	○	○

4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     예산정책담당관

담    당    관      남승우

정책조사팀장      여차민

분석관(주무관)      이수연

☎ 02-2180-7945

e-mail : sooyeon7@seoul.go.kr